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의

중소기업 지원자금(C2자금) 운용현황

2020. 12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요 약]

I. 중소기업 지원자금(C2자금) 개요

(1) 의의

- 지역경제발전 및 지방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한국은행에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원하는 자금

(2) 지원규모

- 광주전남본부 : 1조 779억원(기존C2 4,279억원, 코로나19 6,500억원)

(3) 지원부문

- ① 전략지원부문 : 광주전남지역에 소재하는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 농림수산업 관련 기업,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 ② 특별지원부문 : 광주전남지역에 소재하는 경기부진업종 영위기업
- ③ 일반지원부문 : 창업, 벤처, 혁신기업, 지역특화산업 영위기업 등
- ④ 코로나19 피해기업지원부문 : 광주전남지역에 소재하는 농림어업, 제조업, 서비스업

(4) 지원방식

- 금융기관 대출액의 일정비율(전략 및 특별 : 50%, 일반 : 50% 이내, 코로나19 : 50% 단, 자영업자 및 저신용 기업은 75%)
- 전략 및 특별 부문 배정 후 일반부문은 비례 배정
- 금융기관 대출액이 코로나19 부문 지원액의 한도 초과 시 비례 배정

(5) 동일업체당 지원한도

- 전략부문 : 20억원, 특별 및 일반 부문 : 10억원, 코로나19 : 5억원

(6) 지원기간

- 운전자금 1년, 시설자금 3년 이내(연장 가능)

(7) 지원금리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금리 : 연 0.25%
- 중소기업의 대출금리 : 거래은행과 협의(일반대출에 비해 금리감면 효과)

(8) 지원절차



I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C2자금) 개요

- 중소기업 지원자금(이하 C2자금)은 지역경제 균형발전 및 지방 중소기업 금융 지원을 목적으로 한국은행에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원하는 자금
 -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관할지역* 소재 금융기관이 취급한 지방 중소기업 대출액의 일정비율(50%이내)을 해당 금융기관에 저리로 지원
 - * 광주광역시, 광양시, 나주시, 순천시, 여수시,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영광군,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
전남 서남부지역(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영암군, 해남군, 강진군, 완도군, 진도군, 장흥군)은 한국은행 목포본부에서 지원
 - 2020년 12월 현재 지원규모는 1조 779억원(기존 C2 4,279억원, 코로나19 6,500억원)이며, 대출이율은 연 0.25%
 - 지원대상은 창업·벤처·혁신·녹색기업, 유관기관추천 업체,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주력업종, 농림수산업 관련기업, 경기부진 및 경기민감업종 영위기업 등*

* 자세한 지원부문은 「<별표1> 지원대상업체 선정기준」(p.6) 참조



II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현황

- C2자금의 지원효과 제고를 위해 총한도(1조 779억원)를 전략지원부문, 특별지원부문, 일반지원부문 및 코로나19 피해기업지원부문에 나누어 운용
 - 2020년 12월 현재 8,272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취급액은 2조 9,522억원 수준
 - 전략지원부문 1,764억원, 특별지원부문 384억원, 일반지원부문 2,132억원, 코로나19 피해기업지원부문 6,500억원을 지원

C2자금 지원 실적

(단위 : 개, 건, 억원)

	2018년 12월	2019년 12월	2020년 12월
지원 업체수	4,933	5,162	8,272
금융기관 대출건수	7,528	8,027	12,126
금융기관 대출금액	19,050	21,318	29,522
C2 지원한도	4,279	4,279	10,779

- 지원 분야별 운용내역
 - 코로나19 피해를 많이 받은 경기부진 및 경기민감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64.8%(6,979억원) 배정
 - 지원 자금의 15.5%(1,666억원)는 자동차부품·전자부품·금형산업 등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지역전략산업 및 지역특화산업에 지원
 - 신규창업, 벤처기업 및 신기술업체에도 10.2%(1,098억원)를 배정
 - 광주·전남지방 중소기업지원 유관기관* 추천업체도 지원
 -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상공회의소 등

지원 분야별 C2자금 운용내역

(억원, %)

지원 분야별	2018년 12월		2019년 12월		2020년 12월	
	지원액	구성비	지원액	구성비	지원액	구성비
창업·벤처·혁신기업	1,204	28.1	998	23.3	1,098	10.2
지역특화산업	194	4.5	161	3.8	188	1.7
지역전략산업	1,695	39.6	1,573	36.8	1,478	13.7
유관기관 추천업체	178	4.2	125	2.9	133	1.2
농림수산업 관련기업	438	10.2	591	13.8	728	6.8
경기부진 및 경기민감업 종 영위기업	478	11.2	769	18.0	6,979	64.8
명절자금 지원업체	88	2.1	58	1.4	166	1.5
기 타 ¹	3	0.1	3	0.0	8	0.1
잔여한도 배분	0	0.0	0	0.0	0	0.0
합 계	4,279	100.0	4,279	100.0	10,778	100.0

주: 1) 녹색기업, 전입기업, 수출관련기업,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등

Ⅲ 중소기업 지원자금 주요내용

1. 전략지원부문

- 지역경제발전이라는 운용목적 달성을 위해 C2자금 운용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전략지원부문을 선정하고 동 부문에 대해서는 업체당 20억원 (금융기관 대출취급 기준 40억원) 이내에서 금융기관 대출취급실적의 50%를 우선 배정
- 전자부품제조업, 금형산업, 자동차부품제조업, 광(光)산업 및 관련 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조업, 1차철강제조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 사회적기업, 뿌리기술 전문기업,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등
-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피해로 인해 지원 강화 필요성이 높은 농업·임업 및 어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01~03)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나 상시근로자수 500인 이하의 농림축산어업자 및 농어업법인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서류를 발급 받은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2020년 12월 개정, 2021년 3월 한도 배정시부터 적용)
- 지역 전략산업에 C2자금이 집중 지원되도록 전략지원부문의 배정액을 총 한도의 일정 수준(약 1,800억원)으로 운용
 - 향후 지역경제 기여도, 지역내 산업비중 및 자금수요 등을 감안하여 필요 시 전략지원부문 지원대상 업종 및 한도 변경 가능

2. 특별지원부문

- 대기업 구조조정, 전반적인 소비 회복세 미흡 등의 영향으로 경영, 고용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중소기업에 대하여 지원하고자 특별지원부문*을 선정(운용한도 698억원)하고 동 부문에 대하여는 업체당 10억원(금융기관 대출취급 기준 20억원) 이내, 금융기관 대출 취급실적의 50%를 우선 배정
 - * 조선업, 해운업,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여행업, 운수업, 여가업 등을 영위하는 지방중소기업
- 은행대출 취급기간(2019.9.1.~2021.8.31.)을 설정하여 한시적으로 운용
- 영세 중소기업 등에 대한 은행의 대출 확대 유도를 위해 각 은행별 기업 신용등급중 우량업체로 분류 가능한 금융감독원 기준 신용등급 1~3등급에 해당하는 등급을 부여받은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영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소매중소기업(SOHO)에 대해서는 신용등급 제한 없이 지원
 - 일반지원부문에도 동일하게 적용

3. 일반지원부문

- 전략지원부문 및 특별지원부문에 대해 배정하고 남은 한도를 일반지원부문으로 배정하며 업체당 10억원(금융기관 대출취급 기준 20억원) 이내, 금융기관 대출 취급실적의 50%이내에서 지원

지원부문별 비교

		전략지원부문	특별지원부문	일반지원부문
업체당 한도	한국은행 지원	20억원 이내	10억원 이내	10억원 이내
	금융기관 대출	40억원 이내	20억원 이내	20억원 이내
신용등급 제한		별도 제한 없음	금융감독원 기준 신용등급 1~3등급 해당 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금융감독원 기준 신용등급 1~3등급 해당 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자금지원 방식		전략지원부문 배정액(1,800억원) 범위내에서 금융기관 대출취급실적의 50%를 우선 배정	특별지원부문 배정액(698억원) 범위내에서 금융기관 대출취급실적의 50%를 우선 배정	전략 및 특별지원 부문에 대한 배정후 잔여한도를 금융기관 대출취급실적에 따라 비례 배분
지원 제외업종		-	부동산업, 주점업, 무도장, 도박장, 미용업, 변호사업, 변리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병원 및 의원	부동산업, 주점업, 무도장, 도박장, 미용업, 안마업, 금융관련업

4. 코로나19 피해기업지원부문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광주전남지역 소재 서비스업*, 제조업 및 농림어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신용등급 제한 없음)에 대해 은행이 취급한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대출

* 부동산임대업(6811), 금융·보험(64~66), 공공행정·국방(84), 국제 및 외국기관(99), 유흥주점(56211, 56212) 및 무도장 운영(91291),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9124) 서비스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은행대출 취급기간(2020.3.9.~2021.9.30.)을 설정하여 한시적으로 운용
- 지원대상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대출실적의 50% 해당액(저신용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의 경우 지원비율은 75%)
- 은행 대출실적에 대한 지원액이 한도를 초과할 경우 은행별 대출실적에 비례하여 배정
- 업체당 지원한도는 5억원(은행대출 기준 10억원)*으로 운용

* 2020.5.18일 취급분 이전에는 10억원(은행대출 기준 20억원)

-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운용한도는 6,500억원(2020.5.18일 2,400억원, 2020.10.5일 1,700억원 증액)

<별표1>

지원대상업체 선정기준

전산 코드	지원대상	선 정 기 준 ¹⁾
A1	창업기업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영업개시후 3년 이내(단, 제조업의 경우 5년 이내)인 업체 제외대상 1.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2. 도소매업(45~47), 법무(711), 회계 및 세무(712), 수의업(731), 보건업(86)을 영위하는 업체
A2	벤처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서 정한 벤처기업확인기관이 벤처기업임을 확인한 업체
A3	혁신기업	- 중소기업청이 선정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 정부의 신기술(NET, New Excellent Technology) 인증 또는 신제품(NEP, New Excellent Product) 인증을 획득한 업체 - 금융기관이 기술평가전문기관(기술보증기금, 한국발명진흥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동 기관이 발급한 기술평가인증서를 여신심사자료로 활용하여 대출을 취급한 중소기업 -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등 국제규격 또는 품질인증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해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성능인증을 받은 기업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 참여업체 - 관·학·계 및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업체
A4	녹색기업	- 환경부 선정 녹색기업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의한 환경표지 인증제품 생산업체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에 의한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생산업체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GR마크(우수재활용품 품질인증)인증제품 생산업체 - 중소기업청이 선정한 우수 Green-Biz 기업
A6	추천기업 ²⁾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전남 중소벤처기업청 및 광주전남지역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및 중소기업융합 광주전남연합회가 금융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대출취급은행 앞으로 추천한 업체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10~34)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전라남도 또는 광주광역시가 선정한 유망중소기업
A7	지역특화산업 영위기업 ³⁾ <세부분류: 부표1 참조>	- 음식료품제조업, 석유정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제조업, 1차금속제조업, 통신장비제조업, 조선산업, 디자인산업, 정보통신업, 문화영상산업 관련 서비스업, 관광산업

전산 코드	지원대상	선 정 기 준 ¹⁾
A8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 ³⁾ (세부분류: 부표2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후 1년이상 경과한 아래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차 철강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자부품제조업, 금형산업, 자동차부품제조업, 광산업 및 관련산업, 신재생 에너지 산업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중 상법상 회사 -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중 상법상 회사 - 중소기업부의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요건에 관한 고시」에 따른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을 보유한 뿌리기술전문기업 -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광주광역시 선정 고용우수기업 o 전라남도로부터 일자리 창출기업으로 지원을 받았거나(2년 이내) 받고 있는 중소기업 o 매출취급월 현재 최근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 전년말 대비 5인 이상 혹은 10% 이상(단, 종업업수 2명 이상 증가에 한함) 순증한 중소기업
A9	전 입 기 업 ³⁾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또는 지방단체가 조성한 산업단지중 외국인투자 유치에 위한 전용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생산·가동을 개시한 업체 -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이외의 지역에서 광주전남지역으로 이전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10~34)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A10	수출관련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에서 선정한 수출유망중소기업
A11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³⁾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특화선도기업 선정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전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또는 창업기업 선정서를 발급 받은 중소기업
A13	농림수산업관련기업 ³⁾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업체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01-03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상시근로자수 500인 이하 농림축산업자·농어업법인(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업회사법인)
A14	명절 및 재해 자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절, 천재지변, 대형업체부도 등으로 지역경제를 고려하여 본부장이 특별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체
A15	기타 지원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본부장이 특별히 인정한 업체
A16	경기부진 및 경기민감업종 영위기업 ³⁾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자체 선정한 다음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⁴⁾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조선업(311), 해운업(501~502) o 음식·숙박업(55~56). 단, 주점업(5621)은 제외 o 도소매업(45~47), 여행업(752), 운수업(49, 51~52) o 여가업(90~91). 단,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 무도장 운영업(91291)은 제외

주 1) 인증 또는 계약 등의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취급일자가 관련 인증 또는 계약 등의 유효기간 이내이어야 함

2) 유관기관 추천업체의 경우 업종별 자금지원 형평성,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상업체로 인정 하지 않을 수 있음

3) 광주전남지역 소재(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주소지 기준) 중소기업에 한함

4) 해당 기업이 복수의 사업을 영위할 경우 주된 사업은 매출액,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업종, 사업 계획서의 순서에 따라 결정한다.

지역특화산업 세부분류

업 종 별	대상업체(한국표준산업분류 : 10차 개정)		비 고
음식료품제조업	101 102 104 10742 10743 10792 11209	도축, 육류가공 및 저장처리업 수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 제조업 장류 제조업 차류 가공업 기타 비알콜음료 제조업	
석유정제품 제조업	192	석유정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 제품 제조업	201 203 20412 20421 20493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요업용 도포제 및 관련제품 제조업 계면활성제 제조업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화학섬유 제외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11 22212 22213 22222 22232 2225 2229	고무 타이어 및 튜브 생산업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플라스틱 시트 및 판 제조업 설치용 및 위생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 폴리스티렌 발포, 기타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플라스틱 접착처리,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321 2322 23232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일반도자기 제조업 타일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242 243	1차 비철금속 제조업 금속주조업	
통신장비 제조업	264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	
조선산업	311	선박 및 보트 건조업(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 포함)	
정보통신업	582 5911 591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도소매업, 방송통신업, 임대, 수리업 제외
디자인산업	7320	전문 디자인업	인테리어 디자인 제외
문화영상산업 관련 서비스업	90110 9019	공연시설 운영업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영화관 제외
관광산업		「관광진흥법」 제4조 ~ 제6조에 따라 지정, 허가를 받거나 등록, 신고를 하고 아래의 관광사업을 영위 하는 중소기업 ○ 여행업(국외여행업 제외) ○ 호텔업 ○ 관광객이용시설업 ○ 국제회의업	

지역전략산업 세부분류

업종별	대상업체(한국표준산업분류 : 10차 개정)		비 고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4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241	1차 철강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591 2592	금속단조, 압형 및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금속 열처리, 도금 및 기타 금속가공업																																						
전자부품 제조업	261 262 28111	반도체 제조업 전자부품 제조업 전동기 제조업 중 가전용 모터 제조업																																						
금형산업	29294	주형 및 금형제조업																																						
자동차부품 제조업	303 30400	자동차부품 제조업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																																						
광산업 및 관련산업	빛을 만들고 제어하며, 활용하는 것과 관련된 소재, 부품, 기기 및 시스템 산업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th> <th style="width: 40%;">범 위</th> <th style="width: 50%;">주 요 품 목</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광통신</td> <td>광미디어</td> <td>광섬유</td> </tr> <tr> <td>광통신부품</td> <td>광커넥터, ONU, 광증폭기, 송수신기</td> </tr> <tr> <td>광통신 시스템</td> <td>광전송시스템, 광교환기</td> </tr>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광정보 기기</td> <td>광기록 부품</td> <td>광픽업, 광다이오드</td> </tr> <tr> <td>광기록 매체</td> <td>MOD, DVD, CD-ROM</td> </tr> <tr> <td>광입출력 장치</td> <td>스캐너, 레이저 프린터</td> </tr> <tr> <td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광정밀 기기</td> <td>레이저 발생기기</td> <td>산업용 레이저, 레저용 레이저</td> </tr> <tr> <td>정밀기공</td> <td>절단·용접기, 마킹, 반도체 가공기</td> </tr> <tr> <td>광계측기기</td> <td>광센서, 광계측기기</td> </tr> <tr> <td>의료광학기기</td> <td>레이저응용 치료기, 영상진단기</td> </tr>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광원 응용</td> <td>광원</td> <td>산업용 광원, 고효율 광원</td> </tr> <tr> <td>광변환기기</td> <td>태양전지, CCD</td> </tr> <tr> <td>디스플레이 소자</td> <td>LCD, FED, PDP, LED</td> </tr> <tr> <td>광소재</td> <td>광소재</td> <td>렌즈재료, 광섬유재료, 광촉매</td> </tr> </tbody> </table>				범 위	주 요 품 목	광통신	광미디어	광섬유	광통신부품	광커넥터, ONU, 광증폭기, 송수신기	광통신 시스템	광전송시스템, 광교환기	광정보 기기	광기록 부품	광픽업, 광다이오드	광기록 매체	MOD, DVD, CD-ROM	광입출력 장치	스캐너, 레이저 프린터	광정밀 기기	레이저 발생기기	산업용 레이저, 레저용 레이저	정밀기공	절단·용접기, 마킹, 반도체 가공기	광계측기기	광센서, 광계측기기	의료광학기기	레이저응용 치료기, 영상진단기	광원 응용	광원	산업용 광원, 고효율 광원	광변환기기	태양전지, CCD	디스플레이 소자	LCD, FED, PDP, LED	광소재	광소재	렌즈재료, 광섬유재료, 광촉매	
		범 위	주 요 품 목																																					
	광통신	광미디어	광섬유																																					
		광통신부품	광커넥터, ONU, 광증폭기, 송수신기																																					
		광통신 시스템	광전송시스템, 광교환기																																					
	광정보 기기	광기록 부품	광픽업, 광다이오드																																					
		광기록 매체	MOD, DVD, CD-ROM																																					
		광입출력 장치	스캐너, 레이저 프린터																																					
	광정밀 기기	레이저 발생기기	산업용 레이저, 레저용 레이저																																					
		정밀기공	절단·용접기, 마킹, 반도체 가공기																																					
		광계측기기	광센서, 광계측기기																																					
		의료광학기기	레이저응용 치료기, 영상진단기																																					
	광원 응용	광원	산업용 광원, 고효율 광원																																					
		광변환기기	태양전지, CCD																																					
디스플레이 소자		LCD, FED, PDP, LED																																						
광소재	광소재	렌즈재료, 광섬유재료, 광촉매																																						
신재생에너지산업	태양풍력에너지를 모아서 저장, 변환 및 사용처에 보내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 o 태양열온수기, 집열판, 축열탱크, 열교환기, 풍력발전기, 태양열발전, 풍력발전 등																																							

<별표2>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배정 제외업종

지원제외 대상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KSIC, 제10차)
부 동 산 업	68 부동산업
주 점 업	5621 주점업
무 도 장	91291 무도장 운영업
도 박 장	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미 용 업	9611 이용 및 미용업
안 마 업	96122 마사지업
금 융 관 련 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